# 심사보고서

「충북도립대학」교명 변경 동의안

## 「충북도립대학」 교명 변경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7 2018. 09. 19.(수 ) 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8년 08월 28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0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09월 07일

-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평중 교학처장)

## 가. 제안사유

- 고등교육법 개정(2011 .7월)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 는 명칭 사용 가능하게 되었음
-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최근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였음
- O 공립대학의 교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, 교육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
- O 이에, 우리대학은 교명 변경에 대한 교육부 인가 신청 전에 충청북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현재 교명인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여 학교의 위상 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
- 교육부의 교명변경 인가 후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추진

#### 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- O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  - 학교명칭 변경은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변경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함
  - 「고등교육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립대학도 '대학 또는 대학교'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
- 충북도립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「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」개정시 의회 부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할 때 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됨

## O 종합의견

- '충북도립대학'명칭은 2008년 11월 1일 충북과학대학에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
- 「고등교육법」 제18조 제1항 변경(2011. 7. 21.)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 교 명칭사용
- 전국7개 도립대학 중 2015 충남도립대학교가, 2016년에는 강원도립 대학교가 대학에서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4개 학교가 교명을 변경 하였으며 다른 도립대학에서도 교명 변경이 예상되고 있음
- 이에 충북도립대학에서는 그동안 직원, 학과,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,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찬성의결을 받아 교명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
-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명에 따른 학교 간 차별성을 극복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명변경은 적 절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교명변경이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학교발전에 기여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, 교명변경 자체만으로는 학교 위상과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전공과목 개설 및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 등 대학발전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수립 시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

## 참고1 전국도립대학교 현황

## □ 전국도립대학 기본현황 (2018년 기준)

구분	학 교 명	설립연도	학과수	편제정원	교수인원	비고
1	강 원 도 립 대 학 교	1998	11	975	30	
2	경 남 도 립 거 창 대 학	1996	12	960	29	
3	경 남 도 립 남 해 대 학	1996	8	800	23	
4	경 북 도 립 대 학 교	1997	13	910	30	
5	전 남 도 립 대 학 교	1998	18	1,530	45	
6	충 남 도 립 대 학 교	1997	12	1,104	32	
7	충 북 도 립 대 학	1997	11	1,000	30	

## □ 전국 도립대학 교명변경 추진 현황

변 경 전	변 경 후	변 경 일		
강원도립대학	강원도립대학교	2016. 4. 1.		
충남도립청양대학	충남도립대학교	2015. 1. 1.		
경북도립대학	경북도립대학교	2013. 1. 1.		
전남도립대학	전남도립대학교	2012. 1. 1.		
남해전문대학	경남도립남해대학	2008. 7. 1.		
거창전문대학	경남도립거창대학	2008. 7. 1.		

## 참고 2 관 련 근 거

## □ 고등교육법

#### 제4조(학교의 설립 등)

-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</u>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18조(학교의 명칭)

-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**대학 또는 대학교라는**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### □ 고등교육법 시행령

#### 제2조(학교설립 등)

- ①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·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1. 목적 **2. 명칭** 3. 위치 4. 학칙 5. 학교헌장 6.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. 실험실 습설비 등 내부시설 8. 교사의 평면도 9. 개교예정일 10.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.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
- ⑤ **법 제4조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**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·경영자와 제2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⑥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변경사유 2. 변경내용 3. 변경연월일
-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1. 학교의 폐지: 60일
  - 2. 학교의 위치 변경: 60일
  - 3. 학교의 설립·경영자 변경: 30일
  - 4. 학교의 설립목적, 명칭 또는 부설학교의 설립계획서 변경: 30일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 - O 「'충북도립대학' 교명 변경 동의안」

## 「충북도립대학」교명 변경 동의안

의 안 번 호 17 제출연월일: 2018년 8월 28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고등교육법 개정(2011.7월)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 가능하게 되었음
-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최근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였음
- 공립대학의 교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, 교육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
- 이에, 우리대학은 교명 변경에 대한 교육부 인가 신청 전에 충청북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현재 교명인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여 학교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
- 교육부의 교명변경 인가 후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도록 하고,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추진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충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

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도립대학의 교명변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.

### 1. 목 적

- 고등교육법 개정(2011.7월)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 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
-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최근 강원도립대학까지 전국도립대학 중
  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 추진

Ξ ,		2 0		
변경전	변경후	변경일		
강원도립대학	강원도립 <b>대학교</b>	2016. 4. 1.		
충남도립청양대학	충남도립 <b>대학교</b>	2015. 1. 1.		
경북도립대학	경북도립 <b>대학교</b>	2013. 1. 1.		
전남도립대학	전남도립 <b>대학교</b>	2012. 1. 1.		
남해전문대학	경남도립남해대학	2008. 7. 1.		
거창전문대학	경남도립거창대학	2008. 7. 1.		

<전국 도립대학 교명변경 추진 현황>

○ 이에, 전국 도립대학의 최근 추세에 맞추어 교명 변경을 추진하여 충북유일의 도립대학으로서 위상과 이미지 쇄신 필요

## 2. 교명의 변경

○ 현재의 교명 : 충북도립대학

○ 변경할 교명 : 충북도립대학교

## 3. 교명의 사용

- 교육부의 교명변경 인가 후 사용
-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시행

#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고등교육법

- 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  -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<u>대</u>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\*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7. 21.]

\* 교명 변경 사항이 포함됨

- 제18조(학교의 명칭)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<u>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</u>로 정하며,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7. 21.]

## 충북도립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가 설립.운영하는 도립대학의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교명을 변경하고자 함
- 교명변경 : (현재) 충북도립대학 (변경)충북도립대학교

#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교명변경에 따른 공인신조, 사업자 등록변경, 교기제작 및 외부 시설 및 학내 표지판 등 변경 필요
- 3. 관련조문 : 해당없음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공인신조, 사업자 등록 변경, 교기제작 및 외부시설 및 학내 표 지판 변경에 필요한 금액

## 나. 추계 결과

- 공인신조, 사업자 등록변경, 교기제작 : 2,550천원
- 외부시설 및 학내 표지판 변경 : 110,000천원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(100%)
-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- 6. 작성자 :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 김 평 중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서	입						
서	출	112,550	_	_	_	_	112,550
공인신	조,	1,100	_	_	_	_	1,100
사업자등	등록 변경	450	-	-	_	_	450
교기제	작-	1,000	_	_	_	_	1,000
외부시설	설정비	27,000	_	_	_	_	27,000
학내 표 홍보판	지판 및	83,000	_	l	_	_	83,000
7	내원 조달						
	소 계						
의존	보조금						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					
자체	지방세	112,550					112,550
수입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구・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## [세부 산출기초]

구 분	금액 (천원)	산출근거		
합 계	112,550			
공인신조	1,100	22개 × 50,000 (사무국 14개, 산학협력단 8개)		
사업자 등록 등기 변경	450	3건 × 150천원(대학, 산학협력단, 발전재단)		
교기제작	1,000	5개× 200천원		
외부시설정비 (도로표지판)	27,000	대학 안내표지판 지주형 대형 8개×1,000천원 대학 안내표지판 입형 대형 1개×3,000천원 대학 안내표지판 입형 소형 7개×1,000천원 대학 안내표지판 지주형 1개×2,000천원 대학 안내표지적 1개×13,000천원		
학내 표지판 및 홍보판	83,000	본관 내 현황판 15개×300천원 대학 홍보판(조명식아치) 1개×10,000천원 대학 표찰 및 대학 안내 250개×30천원 대학 흡연실 홍보판 3개 ×500천원 현황판 5개 × 500천원 미래관 외벽 간판 1개×10,000천원 대학안내표지판(조명형) 4개×12,500천원		